

# 소 장

원 고 김 상 조 외 4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외 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소 가	금50,000,000원
첨부할 인지액	금230,000원
첨부한 인지액	금230,000원
송 달 료	금81,000원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소 장

- 원 고
1. 김 상 조
  2. 송 호 창
  3. 김 현 수
  4. 박 근 용
  5. 이 은 정

## 참여연대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이정희, 윤영환, 위대영, 이인영

- 피 고
1.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건희, 윤종용, 이학수, 최도석

2. 윤 종 용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상조에게 금10,000,000원, 원고 송호창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현수에게 금10,000,000원, 원고 박근용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이은정에게 금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합니다)의 주주 본인이거나 주주로부터 주주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로서 참여 연대 소속 위원들입니다.

(2) 피고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윤종용의 사용자이고, 피고 윤종용은 피고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부회장)로서 2004. 2. 27.자 제35기 피고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 2. 사건의 경위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참여연대를 통하여 소수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 삼성전자의 2004. 2. 27.자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피고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주주총회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 주주와 주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시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피고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위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 윤종용은 같은 날 09:00경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및 주식소각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영업보고 사항에 관하여 질문이 있다며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윤종용 의장은 위 질문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시킬 것이며, 발언기회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제1호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삼성전자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총회꾼'이 발언권을 얻어 피고 삼성전자의 2003년 영업실적 향상에 대해 칭찬한 후 제1호 안건을 박수로 가결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피고 윤종용 의장에게 회사에 영업보고에 대한 질의도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하여 다수결로 의결을 하게 되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요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항의하였으나 피고 윤종용 의장은 위 항의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나는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안 결의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주주가 영업보고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피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타 기업에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영업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발언권 신청을 하는 주주에게 기회를 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원고들은 피고 윤종용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 피고 삼성전자의 윤리강령 제6장 및 제7장에 불법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소외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중인 소외 이건희, 소외 이학수, 소외 김인주 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윤종용 의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계획이 없고, 정치자금 제공은 모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피고 윤종용 의장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서정우에 대한 공소

장을 제시하고, 3년 전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불법 자금을 제공한 회사 내 임직원 52명에 대한 퇴직처리 등 조치를 취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려고 하자 피고 윤종용 의장은 공소장과 윤리강령 차트를 치우라며 고함을 지르고, 뒤이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 삼성전자가 고용한 진행요원들이 발언하고 있던 원고들의 자리 쪽으로 들어와 마이크와 공소장, 윤리강령 차트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요원들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 이은정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다른 원고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끌어내면서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다시 피고 윤종용 의장은 '주총꾼'으로 보이는 주주 1인에게 발언권을 주자 그는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박수로 원안을 가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이 피고 윤종용 의장을 향해 '당신은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단상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정상적인 총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윤종용 의장은 '당신들 남의 회사 주주총회에 와서 뭐하는 거냐, 우리 회사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주주다, 당신 몇 주나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냐'라며 감정적으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원고들은 발언권을 얻어 피고 삼성전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 삼성카드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피고 삼성전자와 아무런 영업적 관련이 없는 투자로서 피고 삼성전자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며 출자 참여과정을 해명하기 전에는 영업보고 등 안건 의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회사측 관계자의 '면밀한 검토 끝에 참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 윤종용 의장은 '의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라, 안 되면 표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피고 윤종용 의장은 일방적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표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등은 제1호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위법한 절차 강행에 항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투표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11:00경 피고 윤종용 의장은 제1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한 후 곧바로 제2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장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총회꾼으로 보이는 주주가 일어나 '원안대로 박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또다른 주주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제2호 안건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기에 앞서, 상정된 사외이사 중 요란 맘 후보에게 2003년 삼성카드 유상증자 참여 당시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러한 원고 등의 질의에 대해 다른 주주도 정당한 질의라며 동의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안건은 이사를 선임할 건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원고 등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한 후, 원고 등의 수많은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의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주주들의 박수에 의한 의안표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 윤종용 의장의 본건 주주총회 진행은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질문권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것이며, 더 이상 주주총회에의 참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총회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 윤종용 의장은 원고들의 퇴장을 기다렸다는 듯 일부 주주들의 반대 또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호 안건을 박수로 표결처리하고, 곧이어 제3호 안건까지 정상적인 질의, 응답 등 토론 없이 의장의 유도발언을 통해 박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김상조, 원고 송호창, 원고 김현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원고 김상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가) 원고들이 피고 삼성전자의 소외 서정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소장과 삼성전자의 윤리강령 차트를 펼치며 소외 이견희, 소외 이학수, 소외 김인주 이사들에 대한 피고 삼성전자의 징계계획에 대한 질의 후 주주총회 진행 중 발언내용을 보면

피고 윤종용 의장: 목소리 좀 조용히 하세요. 왜 남의 주총장에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원고 김상조 : 의장은 대리인이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대리인이예요.

피고 윤종용 : 아 대리인이죠. 근데, 나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 나도 주주.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주려하자) 아 그 쪽에 주지 말고 저쪽에 줘요. 저쪽에 (원고 박근용을 지칭하며).

원고 김상조 : (마이크를 받아) 발언권을 주십시오.

피고 윤종용 : 누구보고 여보, 당신 그래요? 안 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와서 몇 주 갖고 있는데 당신 갖고 있으면서 목소리 올려? 몇 주 갖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

원고 김상조 :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피고 윤종용 :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하세요.

원고 김상조 : 윤종용 부회장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주의 자격으로 단상에 계신 게 아닙니다. 의장의 지위는 ... 주주의 대리인 ... 주총의 주인은 주주 ... (발언 도중 사장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가 다가와 원고 김상조의 팔을 잡으며 발언을 말리고)

피고 윤종용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인신공격 발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나) 원고들이 삼성카드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의 발언내용을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 : 이의 있습니다.

피고 윤종용 의장 : (최도석 사장이 답변 중이었으나, 최 사장의 마이크 뺏으며) 1분으로 질문 제한했잖아요. 이번에 얘기하고 끝내요.

원고 김상조 : 의장이 왜 주주의 발언을 제한합니까. 삼성카드 문제는 우리 회사가 봉착한 위험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든 주주가 다 알고 공유해야 하는데 왜 질문을 제한합니까.

피고 윤종용 : 이보세요. 우리 주주로서 우리 회사 주총에 왔거든 지금처럼 좀 고분고분하세요. 아까처럼 시작 때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남의 주총은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

라고 말하는 등

피고 삼성전자의 주주로부터 정당하게 주주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원고 김상조에 대하여 마치 피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방해하러 온 것인 양 호도하며 원고 김상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모욕하였습니다.

## (2) 원고 송호창에 대한 명예훼손

(가) 원고 송호창이 피고 윤종용 의장에게 영업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2001년 12월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비리에 연루된 52명의 임직원을 윤리강령에 따라 퇴직시키는 등 강력한 징계를 한 바 있고, 이때 이견희 회장은 ‘부정은 암이며, 전염병이다. 부정이 존재하는 한 회사는 결국 망한다’라고 일갈했다. 이번에 우리회사 이사들이 한나라당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은 바로 부정한 것 아닌가. 윤리강령을 부하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사내 고위급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회사는

전염병에 걸려 망할 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종용 의장은 수백명의 주주와 기자, 회사관계자들이 경청하는 자리에 공개적으로 원고를 향해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회사가 망하긴 왜 망해.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당장 앉아요.”라며 원고 송호창을 모욕하였습니다.

(나) 피고 삼성전자 측, 피고 윤종용 의장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진행에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기 전에 원고 송호창이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던 도중 피고 윤종용 의장은 “무슨 절차를 ... 의의를 제기하세요. 통과 못 하겠으면, 표결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네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냐. 대학 나온 사람들 아냐. 상식 있는 사람들 아냐. 어거지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와서 주주들을 피곤하게 합니까?”라고 말하여, 정당한 절차 진행에 따른, 즉 의안에 대한 정당한 질의와 응답 등 토론을 거친 후 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의 정당한 보장을 요구하는 원고 송호창이 마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억지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여 원고 송호창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모욕 하였습니다.

### (3) 원고 김현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제2호 안건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소외 요란 맘 이사에게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 김현수가 “충분한 논의

없는 표결은 유신시대 투표와 다름없다. 카드 출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자 피고 윤종용 의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신이라니. 남의 회사에 와서 그딴 소리를 하다니. 저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말하여 피고 삼성전자 주주로부터 정당하게 주주권을 위임받아 위 주주총회에 참가한 원고 김현수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따른 발언을 두고 마치 원고 김현수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도하는 등 원고 김현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모욕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제1호 안건이 상정된 후의 폭행

제1호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이어 피고 삼성전 자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총회꾼’이 제1호 안건을 박수로 가 결시키자고 제안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이 피고 윤종용 의장에게 회사에 영업보고에 대한 질의도 봉쇄한 채 일방적 으로 의안을 상정하여 다수결로 의결을 하게 되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 해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요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항의하였으나 피고 윤종용 의장은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피고 삼성전자에 서 고용한 진행요원 명찰을 단 남자가 원고 송호창의 뒤로 가서 공소장과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잠시 후 원고 송호창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도중 원고 박근용이

소의 이학수, 소의 김인주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검찰의 공소장과 삼성전자 윤리강령을 적은 차트를 펼치자, 피고 윤종용 의장은 '저것을 내리라'며 손짓을 했고, 이에 피고 삼성전자가 고용한 진행요원 1명이 원고들이 앉아 있는 참여연대 쪽 자리로 뛰어 들어와 공소장과 윤리강령 차트를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송호창과 원고 박근용은 진행요원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어디선가 “들어내”라는 소리와 함께 3 ~ 4명의 진행요원이 원고 김현수에게 달려들어 강하게 앞뒤에서 원고 김현수를 밀쳤고, 이에 밀리지 않으려는 원고 김현수는 순식간에 밀려 넘어지듯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저항을 하자 진행요원들은 원고 김현수를 바로 윗 계단에서 풀어 주었던바, 계단에 내려졌을 때 원고 김현수의 상의(가디건과 윗저고리)는 이미 벗겨진 상태였고, 바지벨트도 풀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바지 벨트는 구멍을 끼우는 부분부터 검은 가죽처럼 생긴 윗부분이 약 5cm정도 분리되어 훼손되었습니다.

## (2)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후 로비에서 벌어진 폭행

피고 삼성전자 및 피고 윤종용 의장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진행에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이번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소송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같은 날 11:40경 주주총회장을 퇴장하였습니다. 이어 주주총회장 바깥의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주주총회 진행의 부당성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 삼성전자가 고용한 진행요원(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피고 삼성전자의 계열회사인

에스원 소속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들이 달려들어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 연대 소속 위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이은정은 피고 삼성전자가 고용한 진행요원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 및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은 진행요원들에 의하여 멱살을 잡힌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 다. 원고들의 주주권 침해의 점

##### (1) 원고 송호창에 대한 주주권 침해

##### (가) 감사, 영업, 주식소각 결과 보고 후

원고 송호창이 영업보고와 관련된 질문이라며 발언권을 요청하자

피고 윤종용 의장 : 앉아요 앉아.

원고 송호창 : 주주총회 왜 합니까

피고 윤종용 : 주주총회 주주총회 하려고 하지.

원고 송호창 : 답변을 주십시오

피고 윤종용 : 아까 답변 했잖아요.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 뒤에 개인질문 기회 준다. 의안과 직접 관계없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주총 끝난 후에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회사로 찾아오면 성실히 답변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송호창의 영업보고와 관련된 질의권 등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 송호창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제1호 안건 상정 후

원고 송호창이 피고 윤종용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소외 이건희, 소외 이학수, 소외 김인주 등 세 이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하자 피고 윤종용 의장은 “우리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원고 송호창이 소외 서정우에 대한 공소장을 들고, 원고 박근용이 피고 삼성전자의 윤리강령 차트를 들며 추가 질문하자

**피고 윤종용 의장:** 내려요 내려. 왜 남의 주총장에 그런 거 갖고 온 거야. 조사 중이라잖아. (피고 윤종용 의장이 손짓하자 진행요원 달려들었고, 이후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송호창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여 원고 송호창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주주총회에서 퇴장 직전

원고 송호창이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라고 말하던 중

피고 윤종용 의장 : 무슨 절차를 ... 이의를 제기하세요. 통과 못 하겠으면, 표결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네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냐. 대학 나온 사람들 아냐. 상식있는 사람들 아냐. 어거지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와서 주주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럼 동의 못 한다고 하세요. 수정 동의안을 내세요. 그럼 표결 하자고.

원고 송호창 :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

피고 윤종용 : 왜 회사가 망해요. 어떻게 회사가 망해요. 여기 앞에 이사들이 그렇게 형편 없는 줄 아세요.

원고 송호창 : 표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설명을 듣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것 ...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

피고 윤종용 : 질문 따 거 하세요.

원고 송호창 : 이런 식의 주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중간에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송호창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 송호창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2) 원고 김상조에 대한 주주권 침해

### (가) 원고들의 발언권 요청을 무시하고 제1호 안건 상정 강행 후

원고 김상조 : 주주번호 ○○번 김기식 대리인 김상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아유)

피고 윤종용 의장 : 주주총회 질서 유지권을 위해 만약 시끄럽게 하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 명령 하겠습니다.

원고 김상조 : 의장,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피고 윤종용 : (원고 김상조의 발언을 무시하고 피고 윤종용은 주주들에게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김상조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여 퇴장명령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발언을 무시하는 등으로  
원고 김상조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총회끝으로 보이는 주주의 제1호 안건 박수통과 동의 제청 후

원고들 : 이의 있습니다.

원고 김상조 : 이의 있다는데 통과시키면 주총 무효 소송 대상인거 아니죠?

피고 윤종용 의장 : 모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직후 진행요원 명찰 단 남자가 원고 송호창의 뒤로 가서 공소장과 마이크 빼앗으려 시  
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김상조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무시  
하고 폭행하여 원고 김상조 및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원고들에 대한 폭행 후

원고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발언권을 요구함에 대하  
여

피고 윤종용 의장: 목소리 좀 조용히 하세요. 왜 남의 주총장에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원고 김상조 : 의장은 대리인이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대리인이예요.

피고 윤종용 : 아 대리인이죠. 근데, 나도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몇 주 갖고 있  
어요. 나도 주주요. 나도 주주.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주려 하자) 아 그쪽에 주지 말고  
저쪽에 줘요. 저쪽에(원고 박근용을 지칭하며).

원고 김상조 : (마이크 받아) 발언권 주십시오.

피고 윤종용 : 누구보고 여보, 당신 그래요? 안 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와서 몇 주

갖고 있는데 당신 갖고 있으면서 목소리 올려? 몇 주 갖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

원고 김상조 :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피고 윤종용 :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하세요.

원고 김상조 : 윤종용 부회장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주의 자격으로 단상에 계신 게 아닙니다. 의장의 지위는 ... 주주의 대리인 ... 주총의 주인은 주주 ... (원고 김상조의 발언 중 대머리 남성 다가와 자신이 사장이라고 밝히고 팔을 잡으며 발언을 말렸습니다)

피고 윤종용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인신공격 발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김상조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여 원고 김상조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라) 삼성카드 관련 질문 도중

원고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발언권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 윤종용 의장: (최도석 사장이 답변 중이었으나, 최 사장의 마이크 뺏으며) 1분으로 질문 제한했잖아요. 이번에 얘기하고 끝내요.

원고 김상조 : 의장이 왜 주주의 발언을 제한합니까. 삼성카드 문제는 우리 회사가 봉착한 위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든 주주가 다 알고 공유해야 하는데 왜 질문을 제한합니까.

피고 윤종용 : 이보세요. 우리 주주로서 우리 회사 주총에 왔거든 지금처럼 좀 고분고분하세요. 아까처럼 시작 때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남의 주총 온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말해보세요. 들어보세요. (말 끊으며) 여긴 주총장이고, IR장 아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할 필요 없고 필요하면 회사에 공문으로 하든지 찾아와라. 이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답을 해달라면 다 해줬다. 다 해준거다. 이런 거 말 안 해줘도 되는 거 많다.

(손짓하며) 마이크 끄세요. 질서유지권으로 마이크 끄겠어요.

원고 김상조 : 지금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이 “이의, 질문 있습니다”를 반복했으나 의장은 “질문 안 된다, 회사로 와라, 질문권 줄 수 없다”를 반복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김상조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저지하여 원고 김상조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3) 원고 김현수에 대한 주주권 침해

#### (가) 삼성카드 출자 관련 원고 김상조의 질의응답 후

원고 김현수가 손을 들자

피고 윤종용 의장 : 동의하고 제청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만 하세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통과하자고 하는데 ...

원고 김현수 : 아니 질문 안 끝났는데 ...

피고 윤종용 : 질문은 받지 않겠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면 박수 ... (청중 박수)

원고 김현수 : 주주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다는데 ...

피고 윤종용 : 말이 주주지만은, 대다수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회사에 찾아오면 성실히 답 하겠다지 않아요.

원고 김현수 : 직권남용 ...

피고 윤종용 : 직권남용? 어떻게 직권남용이에요. 법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뭐가 직권남용이요.

원고 송호창 : 이의 절차를 거쳐서 ...

피고 윤종용 : 무슨 절차를 ... 이의를 제기하세요. 통과 못 하겠으면, 표결을 하세요. 여

러분 보세요. 당신네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냐. 대학 나온 사람들 아냐. 상식있는 사람들 아냐. 어거지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와서 주주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라.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언론 끌어들이려고 회사에 나쁜 소리만 하고 있다. 안만 내고 질문은 안 된다. (표결에 이의 있냐고 묻더니 일방적으로 표결선언)

라고 말하고 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정상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안을 표결하는 등으로 원고 김현수를 비롯한 원고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여 원고 김현수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제2호 사외이사 선임안건과 관련하여 소외 요란 맘 이사에게 삼성카드 출자 관련 질문을 하던 중

총회꾼으로 보이는 주주의 원안 박수 통과 동의 제청이 들어오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발언권을 요청함에 대하여

피고 윤종용 의장: 이의 있다는 건 또 표결 하자는 거냐. 표결이나 통과나 그것만 얘기하라. (원고 김현수가 소외 요란 맘 이사에게 질문하자) 사외이사에게 수많은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질문하는 것은 무리다. 의안과 관계없는 질문이다. 지금 안건은 이사를 선임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결정을 했나는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박근용이 반박하자) 우리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돈만 8조가 넘는다. 1000억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다. 회사로 오면 설명해준다. 사외이사 약력 자료를 보내줬는데 미리 서면으로 이의가 없으면 아무 이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간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김현수 및 원고들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저지하여 원고 김현수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4)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주권 침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종용 의장은 원고들의 정당한 발언권 요구에 대하여 발언권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경우에도 피고 삼성전자의 업무 및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라. 피고 삼성전자, 피고 윤종용의 손해배상책임

#### (1) 피고 윤종용의 책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종용은 피고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이자 2004. 2. 27.자 피고 삼성전자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이 상법의 제반규정과 의사에 관한 관행 및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주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주주 본인이거나 참여연대를 통하여 정당하게 주주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

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모욕하고, 피고 삼성전자에 의하여 고용된 진행요원들에 지시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참여연대 소속 위원들을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발언권 요청을 묵살, 발언 제한, 정상적인 토론 없는 일방적인 표결 강행 등으로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 피고 삼성전자의 책임

피고 삼성전자는 피고 윤종용 및 자신이 고용한 주주총회 진행요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윤종용이 피고 삼성전자의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하고,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주주총회 진행요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해 원고들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피고 윤종용과 각자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상조에게 금10,000,000원, 원고 송호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김현수에게 금10,000,000원, 원고 박근용에게 금10,000,000원, 원고 이은정에게 금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강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사

1. 강제2호증                        경위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2통

1. 위 입증방법                        1통

- 1. 납부서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 1. 소송위임장 1통
-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04.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위 대 영

이 인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